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그린하이브리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3조(카드의 발급)</p> <p>① ~ ② (생략) ③ 카드사는 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청인에게 카드에 대한 약관과 연회비 등 카드의 거래조건 및 연회비 반환사유, 반환금액 산정방식, 반환금액의 반환기한 등을 알려야 합니다</p>	<p>제3조(카드의 발급)</p> <p>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청인에게 카드에 대한 약관과 연회비 등 카드의 거래조건 및 연회비 반환사유, 반환금액 산정방식, 반환금액의 반환기한 등을 알리고 이용계약에 따른 계약서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p>	<p>- 금소법 제정에 따른 문구 정비 (법 제23조에 따른 계약서류 제공 의무)</p>
<p>제4조(유효기한 및 재발급)</p> <p>① ~ ③ (생략) ④ 갱신 또는 대체발급, 거절예정 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회원은 카드사가 갱신 또는 대체발급, 거절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의 경우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데이터 비용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효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로 대체전송됩니다. 이하 같습니다.), 팩스(FAX), 이용 대금명세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발급·거절예정사실을 통보하고 통보 후 20일 이내에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또는 대체발급하거나, 갱신</p>	<p>제4조(유효기한 및 재발급)</p> <p>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갱신 또는 대체발급, 거절예정 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회원은 카드사가 갱신 또는 대체발급, 거절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의 경우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데이터 비용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효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로 대체전송됩니다. 이하 같습니다.), 팩스(FAX), 이용 대금명세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발급·거절예정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린 후 해당 기간 내에 그 회원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어 묵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 새로운 유효</p>	<p>- 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6 제2호)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또는 대체발급이 거절됩니다. ⑤ ~ ⑥ (생 략)	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또는 대체발급하거나, 갱신 또는 대체발급이 거절됩니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카드의 관리) ① ~ ③ (생 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 또는 <u>이행을</u>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5조(카드의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u>이행을</u>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u>리하지 아니합니다.</u>	- 공정위 변경 명령에 따른 개정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책임만 부담토록 단서추가
제11조(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 ① ~ ③ (생 략) ④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제휴업체 또는 카드사의 휴업·도산·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또는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2.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유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함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다만,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3. 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	제11조(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카드사 또는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또는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3.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 금소법 제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 관련 문구 정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지 않고 3년 이상 경과하였고, 현재의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 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의 변경</p> <p>⑤ (생 략)</p> <p>⑥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u>카드사의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u>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u>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u>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p> <p>1. 제4항제1호, 제2호 : 사유발생 즉시 2. 제4항제3호 :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p> <p>⑦ ~ ⑫ (생 략)</p>	<p>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u>서면, 우편 또는 팩스에 따른 서신전달, 전화,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그 밖에 상대방에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u>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u>서면, 우편 또는 팩스에 따른 서신전달, 전화,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그 밖에 상대방에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u>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p> <p>1. 제4항제1호, 제2호 : 사유발생 즉시 2. 제4항제3호 :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p> <p>⑦ ~ ⑫ (현행과 같음)</p>	<p>- 금소법 제정 (시행령 제15조) 에 따른 부가 서비스 변경 관련 통지 방법 문구 정비</p>
제14조(이용계약의 성립) ① ~ ② (생 략) ③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계약 성립 이후 카드사는 이자율, 대출 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의 주요	제14조(이용계약의 성립)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계약 성립 이후 카드사는 이자율, 대출 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의 주요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내용이 포함된 <u>상품설명서 또는 대출계약서를 전자우편(E-MAIL), 서면, 이용대금명세서 등 회원과 협의한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u>	내용이 포함된 <u>계약서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u>	- 금소법 제정에 따른 문구 정비 (법 제23조에 따른 계약서류 제공 의무)
제20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계약 철회) ① 회원은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실행일)로부터 14일(이하 “철회기한”이라 합니다)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 ~ ⑤ (생략) ⑥ 카드사는 제1항에 따른 회원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계약 철회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대출계약 철회에 대해 회원에게 설명하고 회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제20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계약 철회) ① 회원은 <u>제34조에 따라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u> ② ~ ⑤ (삭 제) ⑥ (현행과 같음)	- 제34조에 계약 철회 관련 내용을 신설함에 따라 문구 수정 - 제34조에 관련 내용을 규정 함에 따라 삭제 - 항 번호 올림
(신 설)	제34조(청약의 철회) 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금소법 제정 (법 제46조)에 따른 청약의 철회 조항 신설
(신 설)	제35조(위법계약의 해지) 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소법 제정 (법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의 해지 조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34조(변경승인 등) ① ~ ⑤ (생 략)	제 <u>36</u> 조(변경승인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 조 번호 내림
제 <u>35</u> 조(경과 조치) ① ~ ③ (생 략) ④ 제 <u>34</u> 조제5항은 2017년 1월 1일 부터 신규 가입한 회원에게 적용 합니다. ⑤ ~ ⑨ (생 략) ⑩ 제20조제 <u>6</u> 항은 2021년 1월 29 일부터 적용합니다.	제 <u>37</u> 조(경과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 <u>36</u> 조제5항은 2017년 1월 1일 부터 신규 가입한 회원에게 적용 합니다. ⑤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20조제 <u>2</u> 항은 2021년 1월 29 일부터 적용합니다.	- 조 번호 내림 - 문구(조 번호) 수정 - 문구(항 번호) 수정
제 <u>36</u> 조(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생 략)	제 <u>38</u> 조(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현행과 같음)	- 조 번호 내림
제 <u>37</u> 조(관할법원) (생 략)	제 <u>39</u> 조(관할법원) (현행과 같음)	- 조 번호 내림